

자생란 경영체 대표님께(자생란 의무자조금 납부 안내)

올해 새해를 맞아 회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의무자조금 납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는 정부보조금 2억 8천만 원과 회원님들께서 납부해 주신 3억 9천만 원, 총 6억 7천만 원의 자조금을 조성하여 전시·박람회 개최, 수매, 교육, 상설 판매점 운영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침체에 빠진 한국 자생란산업의 회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부보조금 2억 3천 9백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총 7억 원 이상의 자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생란자조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조금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 의무자조금과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 의무자조금(2월말까지 납부 부탁드립니다)

○ 통장번호 : 농협 301-0183-2358-11, 또는 농협 217811-55-00769

(사)한국난재배자협회

○ 납부액(재배분 수에 따라 납부)

품목	규모	자조금 납부액
출란 -재배 분 수 기준	500분 이하	20만원
	501~1,000분	40만원
	1,001~1,500분	60만원
	1,501~2,000분	80만원
	2,001분 이상	100만원(상한액)
출란 외 (종란 등) -재배면적 기준	1,000㎡(약 300평) 이하	20만원
	1,000 초과 ~ 2,000㎡ 이하	40만원
	2,000 초과 ~ 3,000㎡ 이하	60만원
	3,000 초과 ~ 4,000㎡ 이하	80만원
	4,000㎡ 이상	100만원(상한액)

2. 회비 : 3만원(2025년), 농협 217811-55-00769 (사)한국난재배자협회

참고 1) 자생란 의무자조금은 자생란 농업경영체에게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하며 동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에게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의무자조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2024년 정부의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에 따라 자생란의무자조금 안내서를 발부하였으니, 폐업이나 전업 등으로 자생란 농업경영체(서양란, 수입란 제외)가 아닌 경우에는 양해하여 주시고 자생란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571-4734 (사)한국난재배자협회 자생란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무국(담당 : 이성주 사무총장, 권한속 과장)

2025. 2. 3

자생란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